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513740 판결 [주식매매대금 및 임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새별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28.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소외 C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1,000주를 이전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1,434,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1)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차량용 전조등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3. 12. 1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8. 3. 31.부터 2023. 7. 1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23. 7.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2018. 3.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2022. 10. 20.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다), 소외 D는 2018. 3. 31.부터 2022. 10.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 2)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관계회사’라 한다)은 2016. 10. 14. 자동차 부품 및 장비 개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원고, D 등이 임원으로 있었다.
- 3) 이 사건 회사의 2020. 12. 17.경 주주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총 주식수 346,502주).

순번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1	원고	126,000	36.4
2	피고	84,000	24.2
3	D	70,000	20.2
4	주식회사 F	66,502	19.2

- 4) 이 사건 관계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8,000주(지분율 40%)는 D가, 6,000주(지분율 30%)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변동 경위

- 1) 이 사건 회사는 2020.경부터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하기도 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2) 원고와 피고는 2021. 10. 28.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1,00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함께 101,434,83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대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21,001주를 양도하여 2021. 10. 28.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순번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1	원고	104,999	30.3
2	피고	105,001	30.3
3	D	70,000	20.2
4	주식회사 F	66,502	19.2

-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22. 8. 12.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 관련 대출경위

-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전에 기술보증기금 측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게 되었다.
- 2) 위와 같은 문의 과정에서 피고는 2021. 10. 12.경 당시 가장 주식수가 많은 원고가 기존 감사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존 대표이사인 D는 전문경영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였는데(을 제21호증 6, 7쪽 참조), 이후 기술보증기금 측에서 2021. 10. 28.경 피고에게 원고가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원고를 실제 경영주로 볼 경우 리스크등급이 떨어져 대출 진행이 어렵지만 피고가 실제 경영주일 경우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을 제21호증 19쪽 참조), 이어 2021. 10. 28.경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야 기술보증기금 측에서 검토하는 책임경영요건을 충족하며,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하였다(을 제21호증 21 내지

23쪽 참조)

3)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0. 28.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기술보증기금 측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그에 따라 변경된 주주명부, 납부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면서(을 제13호증), 이를 기술보증기금 측에 알렸다(을 제21호증 25, 26쪽 참조).

4) 이 사건 회사는 2021. 11. 5. 금융기관 대출(합계 984,000,000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책임경영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4호증).

라. 원고와 피고의 분쟁경위

1) 피고는 2023. 1. 5.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원고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23. 1. 1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직과 이 사건 관계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면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 D를 통해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을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이 사건 관계회사에 무단으로 이체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직에서 직위해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3) 원고는 2023.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 을 제1 내지 4, 8, 13, 14, 17 내지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대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탈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등을 허위로 설명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헐값’의 주식양도대금만을 지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원고의 취소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주식 중 21,000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2)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101,434,830원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 71,434,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주식양도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피고는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양수대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유무가 쟁점이 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 내용(대금부분)이 무엇인지 확정되는 것이 이하의 논의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9, 10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22. 8.경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정해진 금액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가 2022. 8. 12. 원고에게 27,000,000원을 송금한 점(을 제15 내지 17호증), ② 그 이후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이 사건 주식의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주식회사 F에 보낸 편지에 “제 지분이 B에게 무상양도 되는 무식한 짓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주식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위 원고의 편지에서도 “D 대표가 기업청산을 밟기 위해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고 그 이후의 이 사건 회사를 생각하여 제 지분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18호증 2쪽), ⑤ 주식회사 F이 2020. 12. 4.경 이 사건 회사 신주 66,502주를 주당 10,526원으로 하여 합계 700,000,052원에 인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금은

실제로 납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금채권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이를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여 ‘헐값’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3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증거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4. 5. 20.자 준비서면), 피고는 대출을 받기 위한 동기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한 바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주식양도가 이뤄진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허위라면 굳이 매매대금이 지급될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후 2022. 8. 12. 피고로부터 27,000,000원을 송금받은 점, ④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8. 12.경 이 사건 주식의 대금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피고가 협의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해당 시점에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계약이 기망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대해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대해 기망당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한데, 주식회사 F이 1주당 10,526원에 신주를 인수하였다는 사정(갑 제9, 10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관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당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감사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1)

라. 이 사건 계약의 미지급대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은 30,0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대금으로 3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미지급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한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계약의 중요내용(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계약 체결경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대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착오취소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